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9일,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선교)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등

에 대하여 현행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현행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관계로,

현행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기준인 D, E 등급에 해당되는 즉시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별도로 그 시기를 추가적으로 결정한 후 위험물 표지 설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에 관한 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험

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그 설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위험물 표지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는 QR 코드 및 바코드 등과 같은 전자적 인식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 기본정보, 안전점검 일시, 안전등급 및 결함 부위 등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전자 정보 체계 및 기술 발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김선교의원과 윤재옥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내용을 반영함.